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① K-UBRC 구축	-은퇴 과학기술인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지식을 지역으로 환류하여 대학·기업·연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 -지역 전략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안착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은퇴 과학기술인이 지역 내 대학·기업·연 구기관과 팀을 이루어 공동연구를 수행하거 나,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술지도 및 창업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연구단 운영 지원 -과기원-지역거점대-지자체 간 협업형 대학 원 설립 또는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 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공고 범위 및 사업 구조

- '26년도는 시범사업(100% 국비)이며, '27년 이후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규모·목표 범위 등을 논의 및 확정 예정

구분	시범사업	본사업
기간	26.10.01. ~ 27.03.31.	27.01.01.~ 30.12.31.
재원	100% 국비	국비 + 지방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방비	매칭 없음	매칭 있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과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담 (영리기관 참여 시)
단계 구분	시범사업 26.10.01. ~ 27.03.31.	1단계 : 27.01.01. ~ 28.12.31. 2단계 : 29.01.01. ~ 30.12.31.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예산·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식	본 공고를 통해 선정·협약	시범사업 점검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 결정, 전환 시 재협약 예정

*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 여부와 과제목표·내용·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이 조정되거나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위 표의 내용은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724백만원

□ 지원기간 : 2026.10.01. ~ 2027.03.31.

※ 지원기간은 연구개시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권역 내 과기원, 권역 내 대학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출연(연), 대학, 기업, 혁신기관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

□ 지원내용

① K-UBRC

- 은퇴 과학기술인의 우수한 역량을 지역으로 환유하여 산학연 협업 촉진
 - **(인력 및 지식 환류)** 은퇴 과학기술인이 대학·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지식 자산을 고도화하고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도를 수행하도록 지원
 - **(연구단 운영)** 은퇴 과학기술인과 지역 혁신주체가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및 연구단 운영비 지원
 - **(기술애로 해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도,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 밀착형 기술 서비스 제공
- 중부권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 안착 지원
 - **(전문 인력 양성)** 미래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현지에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협업형 대학원)** KAIST 및 지역 거점대-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대학원 및 산학연 공동 커리큘럼 운영 지원
 - **(지역 정주 여건 조성)** 지역 맞춤형 인턴십, 실무 교육 및 배출된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26년 시범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로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임.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본사업 적용 예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중소기업 ¹⁾	중견기업 ²⁾	공기업 ³⁾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⁴⁾ ,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분되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음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본사업 적용 예정)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기술료)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 ¹⁾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⁴⁾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²⁾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³⁾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중소기업 ¹⁾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실시	중견기업 ²⁾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³⁾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3책5공)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26년 시범사업에 한해 해당하지 않으며, 본사업 전환 시 미정임

< 관련법령 및 규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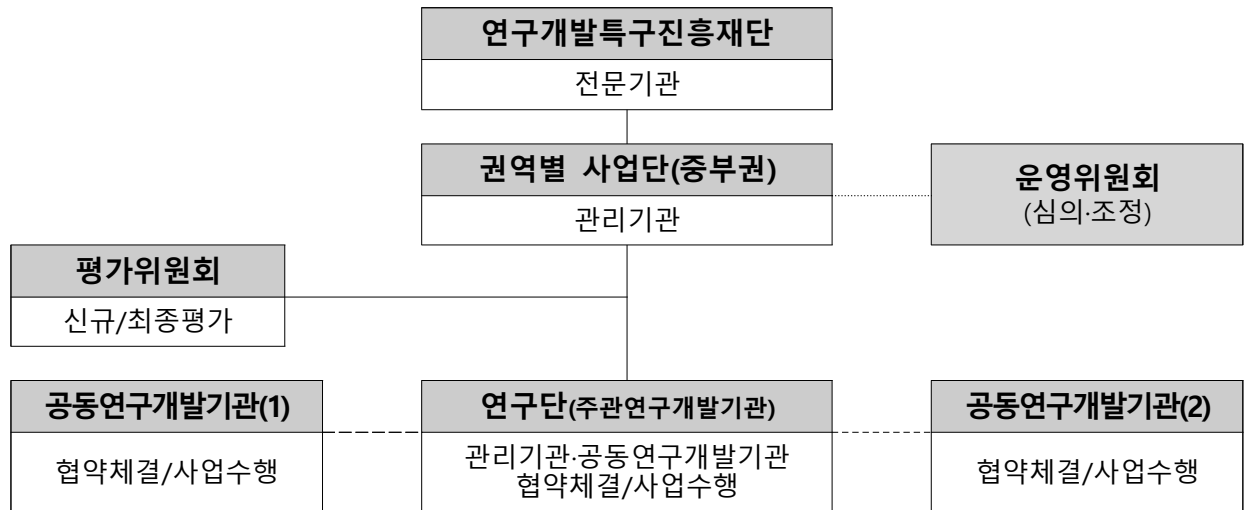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간접비 계상 기준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르며 간접비 고시비율이 산출되지 아니한 대학은 직접비의 5%,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로 함
-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퍼센트로 함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 ※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현물 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금액으로 나눈값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 절차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 필요성	권역 내 기업 기술애로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필요성	15
전문가 유치 및 활용 계획	고경력 은퇴과학자(PI) 유치 방안, 특화연구실 운영, 기술자문·공동연구 수행 계획	25
지역 인재 양성 및 산학연 연계	지역 대학 인재 채용·도제식 멘토링, 기업 애로기술 기반 PBL 및 공동연구 연계	20
운영 및 관리체계	전담조직, 기업발굴, 전문가 관리 및 성과관리체계	20
지역 환류 및 지속가능성	전문가 지식환류, 기업성장 및 지역 내 확산 가능성	20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 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일에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신청 가능)
-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 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요건은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중복신청 제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본 분야 6개 RFP 중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해당 과제 모두 요건 탈락함

※ 참여연구원, 위탁연구책임자는 중복 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을 권고함

- (기관 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함
- (구성요건 미충족) 각 RFP 특기사항에서 정한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제외함
- (부실위험 확인) 영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부실위험 확인 대상이며, 아래 증빙 서류로 판단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최근 3개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09. 11.(금) ~ '26. 10. 12.(월), 14: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26. 09. 11.(금) ~ '26. 10. 12.(월), 14: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가간 : ~'26. 10. 12.(월) 14:00까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 신청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수 붙임·별첨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사업운영협의체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시범 사업 종료 후 점검 결과와 본사업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의 조정 및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재한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관할 지방자치단체(복수 시·도인 경우 각 시·도)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을 [서식 11호]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참여 시·도 전체의 협의 현황을 서식 11호 1부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 ※ 비중부권 소재 참여기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매칭 및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님
- 반드시 과제별 RFP 특기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함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참여제한은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등급을 기재하여야 함
-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단일 견적서는 사유서 필요),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대상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며,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 발생 시 별도 공지 예정 (개별 안내하지 않음)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제출여부 (Y/N)
			주관	공동	위탁		
■ 공통 제출 서류							
1.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요약문))	서식 1	X	X	X	-	불필요
2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1))	서식 2-1~3	O	O	O	HWP	
3.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3))	서식 3	X	X	X	-	불필요
4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병합문서	서식 4	X	X	X	-	불필요
5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5	O	O	O	PDF	
6	(필수)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6	O	O	O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동 동의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청렴서약서	서식 7	O	O	O	PDF	
8	(필수) 법인 등기부등본	-	O	O	O	PDF	
9	(필수) 지방비 매칭 확보 협약서 ※참여 사·도 전체를 한 서식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서식 11	O	X	X	PDF	
10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 12	O	O	O	PDF	
■ 영리기관 제출 서류(비영리기관 제외)							
11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12	(필수) (표준)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13	(필수) 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14	(연구실운영비 계상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	서식 16	O	O	O	PDF	
15	(인건비 현금 계상 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17	O	O	O	PDF	
16	(15번 해당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서식 18	O	O	O	PDF	
■ 협약 시 제출							
17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1억원미만)	서식 19	O	O	X	PDF	
18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서식 20	O	O	X	PDF	
19	(협약 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21	O	O	O	PDF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제출여부 (Y/N)
			주관	공동	위탁		
20	(협약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24	○	○	○	PDF	
21	(협약 시) 평가의견 반영내역서(신규)	서식 27	○	X	X	PDF	

*제출서류의 종류·서식은 공고 기간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공고문 수정을 통해 별도 공지함 (개별 안내하지 않음)

**사업단은 신청자격 확인, 사전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

***본 제출서류는 관련 법령·지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지역 R&D 사업단 운영팀
 - (E-mail) region.rnd@kaist.ac.kr
 - (☎) 042-350-1501/1502/1509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전	042-270-3912
세종	044-300-2215
충남	041-635-3928
충북	043-220-8414

6. 기타사항

□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인 사항

구분	본사업 전환 시 적용(예정)	'26년 시범사업
지방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자체와 합의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비 매칭 없음(100% 국비 지원) 단,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서식 11호)

		를 제출하여야 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 및 부담하여야 함	해당 없음
기술료	○ 본 사업의 RFP는 모두 기술료 징수 대상임	해당 없음 (시범사업 단독 종료 시 미징수)

* 위 사항의 세부 기준 및 제출 시점 등은 시범사업 점검을 거쳐 본사업 전환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임

-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평가 및 보고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사업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26년 시범사업 종료 시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함
 -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단계·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중단, 연구개발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사유 발생 시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중단 여부를 결정함(혁신법 제12조·제15조 등)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노트 지침, 보안대책,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동 사업 지침·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중부권 지역자율 R&D 사업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